

##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안 번호	402
----------	-----

제출년월일 : 1995.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시·도간 협의 추진해야 할 광역행정 업무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 광역행정 사무의 합리적인 협의 추진 기구로서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구성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3개 시도)
- 기능 : 도시계획수립, 환경 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광역행정 사무 전반을 협의 추진
- 협의방식 : 구성 자치단체장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
- 회의개최 : 정기회 년 2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충청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권역안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사무소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내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대전·충청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충청남도(이하 '구성단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로서 하고, 회장은 시·도 직제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순으로 운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부시장, 부지사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감시에 관한 사항
5. 시·도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등 교통망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등에 관한 사항
7. 상·하수도의 설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9. 농림수산물의 유통·판매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10. 금강유역개발 및 이용,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1. 기타 광역행정 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제6조 (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안건의 합의는 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참석) ①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참석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협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구성단체의 실·국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참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처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 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광역행정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10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요구등)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미합의 사항 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성단체 기획관리실장과 협의안건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안건에 따라 관계 실·과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간사와 서기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규약개정등) 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전원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5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충 청 북 도 치 사

충 청 남 도 지 사